

이천시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7. 11.
제출자 : 이천시장

제안이유

주민자치시대에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재정운영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보상금은 행정사무의 수행, 공익목적의 달성을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안 제2조).
- 나.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를 환경오염 행위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자, 민원업무지원등 각종 자원봉사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으로 정함(안 제3조).
- 다. 보상금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안 제4조).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보상의 원칙) ①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사무의 수행, 공익목적의 달성을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신고자

가. 환경오염 행위

나. 불법선거운동 행위

다.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가. 민원업무지원

나.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다. 청소년문제 상담

라. 소비자 상담

마. 물가 모니터

바. 자연보호·국토대청결 운동

사.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

3. 아르바이트 대학생

4. 기타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한 자

제4조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절차 등) 보상금은 이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